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교권 확립 가능성

교육의창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20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했다. 만시지탄 천만다행이다.

사실 교권 보호와 확립을 위한 교원들과 교원단체들의 노력과 실행은 눈물겨운 과정이었다. 전교조는 3월부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대응 행동에 돌입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5만여명 교사들의 서명도 국회에 제출했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이후 5개 교원노조와 단체가 함께 아동학대법 개정 공동대응에 앞장섰고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 활동을 추진해 얻어낸 결과다. 18차례 교사대회를 통해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법개정 운동에 매진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전국의 교사들과 교원단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진즉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의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이 제한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규정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토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학교장에게는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교원의 개인정보가 관계 법

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도 부여하고,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비롯해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 금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의무가 있다.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 조치도 강화, 특히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를 비롯해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전환했다. 정부의 책무성과 행정지원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교권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실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여전히 교사들은 휘둘리고 있다. 대화와 소통, 그리고 공감을 통해 풀어가야 할 교육활동이 여전히 악성 민원 앞에 멈춰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법들이 존재한다. 그중에 정서적 학대 조항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를 빈도와 강도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이 ‘정당한 교육활동’이고,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지? 결국은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철학과 상호존중과 공감 능력의 학교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교권 확립은 가능하다.

社說

‘무안 설득’ 시·도 합의문 이행에 달렸다

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 합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잠정 합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을 열고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시·도가 협의해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5년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안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3가지 안도 담았다. 시·도는 합의문을 통해 시는 이전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 기금 선적 방안을 도는 3조원 규모의 무안군 발전을 위해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시·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노력도 병행한다. 시·도는 이번 합의문을 통해 군공항 반대를 고

수해는 무안군의 민심을 돌려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무안 민심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보여줬다. 앞서 김지사는 지난 13일 올해 마지막으로 무안군에서 도민과의 대화에 나섰다.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무안군수와의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만남은 불발됐다. 김지사는 무안에서 군공항의 ‘ㄱ’자도 못 꺼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놓고 “무안이냐 함평이냐”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도가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지 의문이다.

시·도의 이번 합의문은 과거 휴지조각이 된 2018년 합의문과는 진일보했다는 평가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 진전 시’라는 단소조항을 달았다. 군공항 이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은 불발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시·도가 지난 2018년처럼 ‘양치기 소년’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시·도가 진정성 있게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할때 무안군민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신설 이민청, 취지 살리는 전남으로 와야

김영록 지사, 유치 공식선언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설 예정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전남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가 전남에 들어서 소멸위기에 놓인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전남은 매년 8000여 명의 청년이 광주·서울·경기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고령화 비율도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업·농수산업 등 주요 산업 현장은 외국인력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외국인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전남지역 외국인 수는 3만 3000여 명에서 4만 7000여 명으로 41.5%나 늘었다. 증가율로는 전국 2위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에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 궤를 같이한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민청 설립을 위한 강점도 많다.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육·해·공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동북아 관문도시로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을 갖추고 있다.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 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으로 상향하는 등 전남도의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인구감소 극복을 넘어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다.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할 경우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는 이민청 설립 지지와 함께 이민청의 효과적 운영 방식, 파격적 광역비자 도입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온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전남을 위한 길이면서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공산당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른 게 확실합니다.”

1933년 2월, 독일 의사당에 의문의 화재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히틀러 총리는 “공산당이 불을 질렀다”며 괴벨스 등과 공산당사를 습격했다. 대통령 힌덴부르크를 찾아가 담판에 나섰다. “공산주의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불을 질렀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겁에 질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에게 시국을 수습하라며 대통령 전권을 넘겨줬다.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신 무력하게 권한을 이양하고 말했다. 이 때부터 히틀러는 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나찌의 결정만으로도 법을 통과시키는 권한을 갖게 됐다. 비상대권을 거머쥔 것. 전권을 넘겨주는 무능한 대통령 탓에 절대 권력 히틀러에게 파시즘으로 가는 결정적 길을 터주고 말았다. 당시 나찌당 지지율이 40% 미만으로 1당이었지만 과반을 넘지 못하던 때였다. 권력을 휘두를 수 없던 히틀러는 30% 중반대 낮은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가 공산주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장면 아닌가.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유사한 사례가 우리에게도 있다. 1979년 12·12 사태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에서도 나온다. 영화 속 일개 투스타인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게엄사령관 연행을 재가하라고 다그친다.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결국 재가하면서 쿠데타를 용인하고 만다.

10월26일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유신정권이 종말을 고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를 활용했다. 17년 독재정권이 끝나자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것으로 기대 했지만 12월12일 쿠데타를 감행한 전두환이라는 새로운 군부 독재자가 등장하며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영화를 보고난 뒤 끓어오르는 분노는 단 하나. 한국민주주의가 소수의 하나와 장교들의 쿠데타조자 막지 못할만큼 견고하지 못했다는 데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다.

쿠데타 이후 40여년이 지난 현재도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다.

히틀러가 불법을 저질러도, 전두환이 총칼로 만행에도 냉철한 질타 대신 그 안에 안주하며 동조했던 국민들의 나약한 보신주의도 화를 키운 요인이다. 현 정부 무능에도 국민들만 분노할 뿐 여야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만 눈독을 들이는 양상이다.

80년 민주주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감이 부풀었다가 실패한 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어느 폐천의 글이 가슴을 울린다. ‘밭의 목을 잡지 않고 손의 목을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두런두런 험담하지 않고 웅기종기 덕담하면 얼마나 좋을까/좋은 공동체란 손목 맞잡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던 곳 아니던가.’

박근혜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 재 욱	논설실장 이 용 환	편집국장 박 성 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